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6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 433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 1]및[별표1의2]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1의3]의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를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1의2와 별표1의3을 각각 적용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

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3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징계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하고, “개전의 정”을 “늪우치는 정도”로 한다.

별표1, 별표1의2, 별표1의3,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의해 개정된 징계양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 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u>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u> 나. <u>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u>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u>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u>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u>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u> 나. <u>무단결근</u>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u>비밀의 누설·유출</u>	<u>파면</u>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견책</u>
나. <u>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u>	<u>파면-해임</u>	<u>해임-강등</u>	<u>정직</u>	<u>감봉-견책</u>
다. <u>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u>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정직-감봉</u>	<u>감봉-견책</u>
라. <u>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u>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u>	<u>견책</u>
마. <u>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u>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u>	<u>견책</u>
6. 청렴의무 위반	<u>파면</u>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u>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u>성폭력(미성년자)</u>	<u>파면</u>	<u>파면-해임</u>	<u>해임-강등</u>	<u>정직-감봉</u>
나. <u>성폭력</u>	<u>파면</u>	<u>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견책</u>
다. <u>성희롱</u>	<u>파면-해임</u>	<u>해임-강등</u>	<u>정직-감봉</u>	<u>견책</u>
라. <u>기타</u>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u>	<u>견책</u>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u>파면-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u>	<u>견책</u>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u>파면</u>	<u>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견책</u>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u>파면</u>	<u>해임</u>	<u>강등-정직</u>	<u>감봉-견책</u>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2조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u>100만원 미만</u>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u>100만원 이상</u> <u>300만원 미만</u>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u>300만원 이상</u>	중징계					

[별표 1의3]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2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경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u>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u>	<u>경징계</u>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u>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u>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3. <u>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u>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u>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u>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4. <u>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u> - <u>면허정지 : 중징계</u> - <u>면허취소 : 직권면직</u>
			5. <u>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u>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계)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u>강 등</u>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u>강 등</u>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및 [별표 1의 2]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 1의 3]의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뛰우치 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1의 2와 별표 1의 3 각각 적용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거나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신설></p>	<p>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 73조제 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별표 1 적용

현행	개정안
<p>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p> <p>①(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p> <p>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 73조의 2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사건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p> <p>1. ~ 4.(생략)</p> <p>② (생략)</p>	<p>제4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 73조의 2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사건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p> <p>1. ~ 4.(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 재요령)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u>징계위원회</u>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u>개전의 정</u>,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 재요령)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u>인사위원회</u>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u>뇌우치는 정도</u>,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제2조 관계)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도가 중 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도 가 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 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나. 기타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위반	파면·해임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 면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견 책
성폭력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성폭력(미성년자)	파 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기타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8-2. 정치운동 금지위반	파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신설2005.06.30>				
9.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개정2005.06.30>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개 정 안

[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악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악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 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u>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u> 나. <u>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u>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u>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u> 나. 기 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u>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u> 나. <u>무단결근</u>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u>비밀의 누설·유출</u> 나. <u>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u> 다. <u>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u> 라. <u>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u> 마. <u>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u>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해임 파면	강등-정직 파면-해임	감봉 강등-정직	견책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의2] <신설2005.06.30>
 징 계 양 정 기 준
 (제2조 관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수동	전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수수행위 비위유형	능동	전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의제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전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전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 수사·조사·단속 등의 상황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2조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 부터 의제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의3] <신설2009.04.15>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2조 관계)

유형별	처리기준	비고
면허정지(최초)	경 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	경정계 의결요구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횟수 적용시점은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며 횟수 산정 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함
면허취소(최초)		
단순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 발생	중정계 의결요구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인 경우 적용됨 ○단순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혈중알콜농도 0.05% (면허정지 이상)이상을 의미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제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단순 음주운전(3회이상)		
면허취소(2회이상)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중정계 의결요구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제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별표 1의3]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2조 관련)

유형별	처리기준	비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경정계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정계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중정계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u>징계양정감정기준</u> (제4조 관계)</p>		<p>[별표 3] <u>징계의 감정기준(제4조 관계)</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td> <td style="width: 50%;">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된 징계양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과 해 정 감 견</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 임 직 봉 책</td> </tr> </table>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된 징계양정	과 해 정 감 견	면 임 직 봉 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td> <td style="width: 50%;">제4조에 따라 감정된 징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과 해 정 감 견</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 임 <u>강 등</u> 정 직 감 봉 견 책</td> </tr> </table>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정된 징계	과 해 정 감 견	면 임 <u>강 등</u> 정 직 감 봉 견 책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된 징계양정								
과 해 정 감 견	면 임 직 봉 책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정된 징계								
과 해 정 감 견	면 임 <u>강 등</u> 정 직 감 봉 견 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td> <td style="width: 50%;">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된 징계양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과 해 정 감 견</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 임 직 봉 책</td> </tr> </table>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된 징계양정	과 해 정 감 견	면 임 직 봉 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td> <td style="width: 50%;">제4조에 따라 감정된 징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과 해 정 감 견</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 임 <u>강 등</u> 정 직 감 봉 견 책</td> </tr> </table>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정된 징계	과 해 정 감 견	면 임 <u>강 등</u> 정 직 감 봉 견 책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된 징계양정								
과 해 정 감 견	면 임 직 봉 책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정된 징계								
과 해 정 감 견	면 임 <u>강 등</u> 정 직 감 봉 견 책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09-49호

지방공단 - 제4토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적도근점(11점)
측량성과를 지적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일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평면직각 증횡선수치		토지소재	설 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 칭	번 호	X(m)	Y(m)			
지적도근점 (지적공사)	51214	274922.21	169021.88	군산시 산북동1519	09.5.04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51215	274669.06	169238.05	군산시 산북동1534-2	“	“
“	51216	274543.80	169357.69	군산시 산북동1505-1	“	“
“	51217	274280.58	169606.86	군산시 산북동1496	“	“
“	51218	274172.94	169706.86	군산시 산북동1402	“	“
“	51219	274058.48	169814.47	군산시 산북동1487	“	“
“	51220	273942.90	169923.10	군산시 산북동1483-1	“	“
“	51221	273754.62	170093.20	군산시 산북동1475-1	“	“
“	51222	273633.47	170206.74	군산시 산북동1019-1	“	“
“	51223	273413.79	170414.71	군산시 산북동991-12	“	“
“	51224	273352.73	170474.15	군산시 산북동991-1	“	“
		이	하	여	백	

군산시 고시 제2009 - 50호

도로명 부여·변경·폐지 및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도로명 부여·변경·폐지 및 도로구간에 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6. 2.

군 산 시 장

1. **고시기간** : 2009. 6. 3 ~ 2009. 6. 16(14일간)
2. **고시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고시내용** : 총 230건

가. 도로명 부여 : 145건

나. 도로명 및 구간변경 : 83건

다. 도로명 폐지 : 2건

※ 세부내용 : 별첨조서와 같음

4. 변경 등 사유

현 실정에 맞게 도로명 및 도로구간을 정비(도로명 부여, 부적절한 도로명 변경, 불필요한 도로명 폐지 등)하여 도로구간의 최장성 확보 및 효율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함.

※ 도로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지리정보담당(☎ 063-450-60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새주소위원회 도로명 심의조서

번호	도로 위계	심의 사유	기존 도로명	도로명		로의 기종점		부여 및 변경사유	관련 읍면동
				한글	한문	기점	종점		
1	로	변경	오리실로	옥구남로	沃溝南路	선제리 94-7	수산리 466-8	옥구중심에서 남쪽으로 가는 도로	옥구읍
2	로	변경	이곡로	옥구동로	沃溝東路	상평리 777-15	수산리 686	옥구읍 동쪽에 위치한 도로, 상평리,이곡리, 수산리통과도로	옥구읍
3	길	변경	버들1길	평유길	坪柳路	이곡리 766	이곡리 246-5	마을명칭에서 인용	옥구읍
4	길	변경	광월산길	한절길		상평리 777-15	상평리 787	한절마을 통과도로	옥구읍
5	길	부여		개구말1길		상평리 821	상평리 787	옛지명에서 인용	옥구읍
6	길	변경	옥실길	오곡길	五谷路	오곡리 116-4대	오곡리 501-27답	지명 인용	옥구읍
7	길	구간 조정		구성길	九城路	남내리 526	남내리 568	마을명칭에서 인용	옥산면
8	길	부여		당북원당길	堂北元堂路	당북리 994-2	당북리 44-26	마을명칭에서 인용	옥산면
9	길	변경	대려윗길	대려1길	大呂1路	옥산리 174-24	옥산리 353-3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산면
10	길	변경	대려아랫길	대려2길	大呂2路	옥산리 272-9	옥산리 332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산면
11	길	변경	여로3길	옥산신성길	玉山新成路	옥산리 818	옥산리 산262	마을명칭에서 인용	옥산면
12	길	변경	버들3길	배그매3길		대정리 744	금성리 316	옛지명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산면
13	길	변경	외류길	외류1길	外柳1路	금성리 318-1	금성리 230-2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산면
14	길	변경	버들2길	외류2길	外柳2路	금성리 320	금성리 194-2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산면
15	길	변경	우동길	우동1길	雨同1路	남내리 788	남내리 788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산면
16	길	부여		우동2길	雨同2路	남내리 670	남내리 산292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산면
17	로	변경	용화로	남내로	南內路	남내리 544-6	원우리 308-4답	마을명칭인용/주민의견 수렴안	옥산면
18	길	부여		신당1길	新堂1路	학당리 353-5	학당리 310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회현면
19	길	변경	지새울길	임피1길	臨陂1路	읍내리 234-3	축산리 533-2	임피면 소재지로 면이름에서 서수번호사용	임피면
20	길	변경	안흥길	임피2길	臨陂2路	읍내리 229-11	축산리 533-2	임피면 소재지로 면이 름에서 서수번호사용	임피면
21	길	변경	호령길	임피안길	臨陂內路	읍내리 233-12	읍내리 515-3	임피면 소재지로 면이 름에서 서수번호사용	임피면
22	길	부여		성터길		읍내리 502-6	읍내리 426-6	옛 성터로 가는 도로	임피면
23	길	변경	임피성내길	동현길	東軒路	읍내리 733-16	축산리 539	옛 동현위치로 가는 도로	임피면

24	길	변경	동헌길	임피성내길	臨陂城內路	읍내리 272-2	읍내리 733	옛 임피성안으로 가는 도로	임피면
25	길	부여		지새울길		축산리 547	축산리 335	마을명칭에서 인용	임피면
26	길	부여		범호재길		읍내리 8-2	읍내리 44	옛지명에서 인용	임피면
27	길	변경	족세길	안흥길	安興路	읍내리 678-3	읍내리 544	마을명칭에서 인용	임피면
28	길	부여		안흥안길	安興內路	읍내리 637-1	읍내리 604	마을명칭에서 인용	임피면
29	길	변경	술산금암길	신타매길		술산리 746	술산리 226-92	옛지명에서 인용	임피면
30	길	부여		계남1길	鷄南1路	축산리 136-2도	축산리 532-10도	마을명칭에서 인용	임피면
31	길	부여		임피서길	臨陂西路	미원리 79-2	미원리 640-5	임피면 서쪽을 통과하는 도로	임피면
32	길	부여		독골길		읍내리 650-2	읍내리 570	옛지명에서 인용	임피면
33	로	변경	서수로	서라로	瑞羅路	서수리 1102-10	나포리 455-6	서수, 나포를 연결하는 도로로 서라선이라함.	서수면
34	길	변경	화월길	월암길	月岩路	화등리 389-4	화등리 374-9	마을명칭에서 인용	서수면
35	로	부여		함안로	咸安路	축산리 산96-7	관원리 산24-4	익산 함라와 용안으로 가는 도로/ 시군 협의 구간 도로	서수면
36	로	변경	신창로	만경로	萬頃路	북교리 1328	산월리 981-4	만경강을 지나는 도로/ 시군 협의 구간 도로	대야면
37	로	부여		금만로		북교리 1328	산월리 29-10	김제 금만평야를 지나는 도로/ 시군 협의 구간 도로	대야면
38	길	변경	삼길길	삼길1길	三吉1路	접산리 958-9	접산리 1160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대야면
39	길	부여		삼길2길	三吉2路	접산리 225-16	접산리 1151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대야면
40	길	부여		상광안길	上光內路	광교리 1001-36	광교리 32-6	마을명칭에서 인용	대야면
41	길	부여		서중길		지경리 999-1	지경리 2228	옛지명에서 인용	대야면
42	길	부여		하광1길	下光1路	광교리 1001-26	광교리 606-2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대야면
43	길	변경	하광길	하광2길	下光2路	광교리 1130	광교리 632-62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대야면
44	로	부여		오산로	鰲山路	접산리 964구	접산리 251-7도	익산시 오산면에 이르는 도로/ 시군 협의 구간 도로	대야면
45	길	변경	대방길	개정안길	開井內路	운회리 769-3	통사리 586	운회리, 아산리, 발산리, 통사리를 지나는 개정면 안에 위치한 도로	개정면
46	길	부여		남발산길	南鉢山路	발산리 863-5	통사리 산172	마을명칭 인용	개정면
47	길	부여		대방1길	大房1路	발산리 26-1전	발산리 3전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개정면
48	길	부여		대방2길	大房2路	발산리 256-6	발산리 254-1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개정면

49	길	변경	대황길	대황1길	大風1路	발산리 618-7	발산리 601-13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도로구간 직진성 결여	개정면
50	길	부여		대황2길	大風2路	발산리 462-18	발산리 103-168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개정면
51	길	부여		대황3길	大風3路	발산리 113-10	발산리 583-2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개정면
52	길	부여		대황4길	大風4路	발산리 610-33	발산리 104-2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개정면
53	길	부여		옥석길	玉石路	옥석리 842-42	쌍봉리 37-7	옥석마을 통과 도로	개정면
54	길	부여		옥석신기길	玉石新基路	옥석리 250-2	옥석리 843	옥석리의 신기마을 통과도로	개정면
55	길	부여		고봉3길	高峰3路	고봉리 206-1	고봉리 137-13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56	길	부여		고봉4길	高峰4路	고봉리 213-1	고봉리 199-6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57	길	부여		고봉5길	高峰5路	고봉리 54-5	고봉리 105-1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58	로	부여		군익로	群益路	고봉리 382-1	영창리 282-8	군산과 익산을 잇는 도로/ 시군 협의 구간 도로	성산면
59	길	변경	여방길	여방1길	余方1路	여방리 593-5	여방리 162-4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0	길	부여		여방2길	余方2路	여방리 144-20	여방리 195-2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1	길	변경	기린길	기린1길	麒麟1路	여방리 436-3	여방리 75-2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2	길	부여		기린2길	麒麟2路	여방리 산 53-6	여방리 724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3	길	변경	작촌길	간치말1길		산곡리 248-6	산곡리 66-3	옛지명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4	길	부여		간치말2길		산곡리 289-2	산곡리 338-1	옛지명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5	길	변경	구작길	간치말3길		산곡리 314-9	산곡리 83-1	옛지명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6	길	부여		간치말안길		산곡리 340-2	산곡리 158-3	옛지명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7	길	부여		둔덕4길	屯德4路	둔덕리 526	둔덕리 506-2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8	길	부여		둔덕5길	屯德5路	둔덕리 387-16	둔덕리 320-9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69	길	부여		성황당길	城隍堂路	성덕리 340-15	성덕리 489	옛지명에서 인용	성산면
70	길	변경	창천길	식천3길	食川3路	도암리 424-2	도암리 318-6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71	길	변경	우곡길	우곡1길	牛谷1路	창오리 290-12	대명리 310-2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 사용	성산면
72	길	부여		우곡2길	牛谷2路	대명리 산 79-2	대명리 263-2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73	길	변경	덜걱다리길	창오1길	倉梧1路	창오리 232-5	창오리 410-1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74	길	부여		창오2길	倉梧2路	창오리 544	창오리 521-6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75	길	변경	창오길	창오3길	倉梧3路	창오리 526-1	창오리 534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76	길	부여		환동1길	環洞1路	도암리 565-9	도암리 634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성산면
77	길	변경	원장상길	고상골길	古相汜路	나포리 831	장상리 628-2	옛지명에서 인용/ 도로구간 직진성 결여	나포면
78	길	부여		미루매길		나포리 818	장상리 산440	옛지명에서 인용	나포면
79	길	구간 조정		군둔길	軍屯路	나포리 831	장상리 835-3	마을명칭에서 인용	나포면
80	길	변경	옥곤문화길	옥곤문화1 길	玉崑文化1 路	옥곤리 489-1	옥곤리 914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나포면
81	길	부여		옥곤문화2 길	玉崑文化2 路	옥곤리 915	옥곤리 465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나포면
82	길	변경	등동길	등동1길	燈洞1路	옥곤리 444-3	옥곤리 363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나포면
83	길	부여		등동2길	燈洞2路	옥곤리 351-1	옥곤리 산94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나포면
84	길	변경	박머리길	입점고분길	笠店古墳路	나포리 831	시경계	시군간 협의도로, 입점 리 고분군으로 가는 도로/ 시군 협의 구간 도로	나포면
85	길	부여		신방길	新芳路	나포리 822구	나포리 180대	옛지명에서 인용	나포면
86	길	변경	신방길	박말길		나포리 778-1	나포리 841-1	옛지명에서 인용	나포면
87	길	부여		수철길	水鐵路	나포리 40-4	나포리 265-5	옛지명에서 인용	나포면
88	길	변경	서왕2길	서왕길	西旺路	서포리 599	서포리 512-2	마을명칭에서 인용	나포면
89	길	변경	서왕1길	수레길		서포리 604-12	서포리 543	옛지명에서 인용	나포면
90	길	변경	옥동길	옥동1길	玉洞1路	나포리 742	나포리 산34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나포면
91	길	부여		옥동2길	玉洞2路	나포리 742-1	나포리 546	마을명칭에 서수번호사용	나포면
92	로	변경	망해로	망해산로	望海山路	대명리 360	옥곤리 840-9	망해로의 어감이 솔지 않고 망해산에서 인용/도로 명변경신청	나포면
93	로	폐지		방령로	芳嶺路	마룡리 905-2	나포리 455-6	방령을 지나는 도로가 아님	나포면
94	로	부여		새만금로		비응도동	부안군 변산면 인 접	새만금방조제위 제방도로, 국도 77호선	옥도면

95	로	부여		고군산로	古群山路	신시도리 158	장자도리 산4-29	고려때부터 선유도를 포함한 인근의 섬 전체를 고군산도라 부름	옥도면
96	길	부여		개야도길	開也島路	개야도리 13-19	개야도리 51	섬이름 사용	옥도면
97	길	부여		개야도1길	開也島1路	개야도리 13-19	개야도리 781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98	길	부여		개야도2길	開也島2路	개야도리 13-19	개야도리 781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99	길	부여		개야도3길	開也島3路	개야도리 781	개야도리 781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00	길	부여		개야도4길	開也島4路	개야도리 413-1	개야도리 781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01	길	부여		개야도5길	開也島5路	개야도리 413-1	개야도리 413-2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02	길	부여		개야도6길	開也島6路	개야도리 309-2	개야도리 산 26-13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03	길	부여		개야도7길	開也島7路	개야도리 781	개야도리 167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04	길	부여		개야도8길	開也島8路	개야도리 197-2	개야도리 산 26-30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05	길	부여		관리도길	串里島路	관리도리 1-2	관리도리 68-2	섬이름 사용	옥도면
106	길	부여		두리도길	斗里島路	두리도리 산34	두리도리 35-5	섬이름 사용	옥도면
107	길	부여		말도길	末島路	말도리 143 제	말도리 53	섬이름 사용	옥도면
108	길	부여		말도1길	末島1路	말도리 32	말도리 23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09	길	부여		말도2길	末島2路	말도리 143 제	말도리 산1-3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10	길	부여		명도길	明島路	말도리 산 115-45	말도리 산115-23	섬이름 사용	옥도면
111	길	부여		명사십리길	明沙十里路	선유도리 213-3	선유도리 171-1	섬이름 사용	옥도면
112	길	부여		명사십리1길	明沙十里1路	선유도리 산 23-1	선유도리 1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13	길	부여		명사십리2길	明沙十里2路	선유도리 산13	선유도리 7-1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14	길	부여		무녀도길	巫女島路	무녀도리 산 130-1	무녀도리 193	섬이름 사용	옥도면
115	길	부여		무녀도1길	巫女島1路	무녀도리 산 119-1	무녀도리 산94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16	길	부여		무녀도2길	巫女島2路	무녀도리 산113	무녀도리 241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17	길	부여		무녀도3길	巫女島3路	무녀도리 238	무녀도리 136-1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18	길	부여		무녀도4길	巫女島4路	무녀도리 238	무녀도리 215-15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19	길	부여		무녀도동길	巫女島東路	무녀도리 산10	무녀도리 31-19	섬이름에 방위 사용	옥도면
120	길	부여		방축도길	防築島路	말도리 산129-1	말도리 산128-1	섬이름 사용	옥도면
121	길	부여		방축도1길	防築島1路	말도리 132	말도리 산129-1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22	길	부여		방축도2길	防築島2路	말도리 131-5	말도리 산129-1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23	길	부여		방축도3길	防築島3路	말도리 산129-1	말도리 산129-1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24	길	부여		비안도길	飛雁島路	비안도리 492	비안도리 2	섬이름 사용	옥도면
125	길	부여		비안도1길	飛雁島1路	비안도리 492	비안도리 63-20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26	길	부여		비안도2길	飛雁島2路	비안도리 492	비안도리 63-20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27	길	부여		비안도3길	飛雁島3路	비안도리 63-20	비안도리 63-20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28	길	부여		선유북길	仙遊北路	선유도리 산 35-2	선유도리 산78-1	섬이름에 방위 사용	옥도면
129	길	부여		선유남길	仙遊南路	선유도리 산 35-2	선유도리 산65	섬이름에 방위 사용	옥도면
130	길	부여		선유남1길	仙遊南1路	선유도리 산65	선유도리 산65	섬이름에 방위 및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31	길	부여		선유남2길	仙遊南2路	선유도리 산65	선유도리 393-6	섬이름에 방위 및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32	길	부여		선유남3길	仙遊南3路	선유도리 산66	선유도리 산65	섬이름에 방위 및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33	길	부여		신시도길	新侍島路	신시도리 산51	신시도리 산17-1	섬이름 사용	옥도면
134	길	부여		신시도1길	新侍島1路	신시도리 193	신시도리 60-1 옆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35	길	부여		신시도2길	新侍島2路	신시도리 22-5	신시도리 산73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36	길	부여		신시도3길	新侍島3路	신시도리 193	신시도리 산47-1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37	길	부여		야미도1길	夜味島1路	야미도리 1-2	야미도리 1-1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38	길	부여		야미도2길	夜味島2路	야미도리 1-2	야미도리 150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39	길	부여		야미도3길	夜味島3路	야미도리 35	야미도리 69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40	길	부여		야미도4길	夜味島4路	야미도리 150	야미도리 산 141-1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41	길	부여		어청도길	於靑島路	어청도리 322-20	어청도리 산14	섬이름 사용	옥도면
142	길	부여		어청도1길	於靑島1路	어청도리 322-20	어청도리 28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43	길	부여		어청도2길	於靑島2路	어청도리 368	어청도리 16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44	길	부여		연도1길	煙島1路	연도리 176 제	연도리 산1-3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45	길	부여		연도2길	煙島2路	연도리 177-4	연도리 산3-15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46	길	부여		장자도1길	壯子島1路	선유도리 158	장자도리 산78-1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47	길	부여		장자도2길	壯子島2路	장자도리 158	장자도리 33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옥도면
148	길	부여		죽도길	竹島路	죽도리 산9	죽도리 산9	섬이름 사용	옥도면
149	길	변경	남동길	남동1길	南洞1路	옥봉리 184-51	옥봉리 270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50	길	부여		남동2길	南洞2路	옥봉리 1673	옥봉리 1675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51	길	부여		남동3길	南洞3路	옥봉리 319	옥봉리 578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52	길	변경	닭매길	당매1길		옥봉리 387-3	옥봉리 423-17	닭모양 산이있어 닭매, 현재 당매로 불림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53	길	부여		당매2길		옥봉리 395-12	옥봉리 401-26	닭모양 산이있어 닭매, 현재 당매로 불림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54	길	부여		선연1길	仙緣1路	선연리 76-4	선연리 210-53	리명칭에서 서수사용	옥서면
155	길	부여		선연2길	仙緣2路	선연리 114-1	선연리 137-1	리명칭에서 서수사용	옥서면
156	길	부여		선연안길	仙緣內路	선연리 2077	선연리 2154	리명칭에서 서수사용	옥서면
157	길	변경	장원길	선연장원길	仙緣長源路	선연리 41-3	옥봉리 799-2	마을명칭에서 인용	옥서면
158	길	변경	송촌윗길	송촌3길	松村3路	선연리 321-2	옥봉리 839-4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59	길	변경	옥선길	옥서서길	玉西西路	선연리 297-29	옥봉리 471-36	옥서면 서쪽에 위치, 송촌, 수라, 장전마을 통과	옥서면
160	길	변경	새말길	신동1길	新洞1路	옥봉리 1795-1	옥봉리 2072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61	길	부여		신동2길	新洞2路	옥봉리 1654-8	옥봉리 1654-1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62	길	부여		신동3길	新洞3路	옥봉리 2071	옥봉리 600-4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63	길	부여		신동4길	新洞4路	옥봉리 2071	옥봉리570-2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옥서면
164	길	폐지		수덕산길	水德山路	금동 2-6	금동 2-4	수덕산 인용	해신동
165	길	구간 조정		해망1길	海望1路	해망동 1004-23	해망동 990-86	동 명칭에 서수번호 사용/ 소방도로 개설	해신동
166	길	구간 조정		해망2길	海望2路	해망동 1004-107	해망동 993-38	동 명칭에 서수번호 사용/ 소방도로 개설	해신동
167	로	변경	콩나물고개	아리랑로		중앙로1가 25-28	선양동 217-2	콩나물고개의 어감이 좋지않고	월명동

								예전 명칭이 아리랑고 개입/주민의견	
168	길	부여		창성길	昌成路	창성동 119	명산동 5-24	동 명칭 사용	월명동
169	길	부여		석치길	石峙路	문화동 921	송풍동 956-11	지역명칭 사용	신평동
170	길	변경	고가서길	팔마동길	八馬東路	경장동 472도	장재동 378 도	팔마산 동쪽에 위치한 도로	흥남동
171	길	구간 조정		서당길	書堂路	구암동 64-21	구암동 58-5	동 명칭사용/ 소방도로개설	구암동
172	길	구간 조정		대밭길		사정동 370-1	사정동 460	마을뒤쪽으로 대밭이 무성하여 인용/ 소방도로개설	개정동
173	길	구간 조정		사정길	沙亭路	사정동 526	사정동 448-13	동 명칭사용/ 소방도로개설	개정동
174	길	부여		미제남길	未濟南路	미룡동 59-143	미룡동 59-149	미제저수지 남쪽 방위사용	나운3 동
175	길	부여		지산북길	紙山北路	나운동 산227-5	나운동 191-44	지산길 북쪽에 위치한 도로구간	나운3 동
176	길	부여		개사안1길	開寺內1路	개사동 414-4	개사동 189-8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도로명변경동의서	나운3 동
177	로	변경	군산새만금 로	새만금북로		오식도동 837	광교리 484-16	새만금 북쪽에 위치한 도로/ 시군 협의 구간 도로	소룡동
178	로	부여		비응로	飛鷹路	비응도동 90	비응도동 40	섬 이름 사용	소룡동
179	로	부여		비응남로	飛鷹南路	비응도동 90	비응도동 72	섬이름에 방위사용	소룡동
180	로	부여		비응동로	飛鷹東路	비응도동 104	비응도동 40	섬이름에 방위사용	소룡동
181	길	부여		비응남1길	飛鷹南1路	비응도동 90	비응도동 81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82	길	부여		비응6길	飛鷹6路	비응도동 72	비응도동 72동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83	길	부여		비응안6길	飛鷹內6路	비응도동 61-4 공	비응도동 46-8공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84	길	부여		비응안7길	飛鷹內7路	비응도동 67-3	비응도동 55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85	길	부여		비응1길	飛鷹1路	비응도동 40	비응도동 40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86	길	부여		비응2길	飛鷹2路	비응도동 58	비응도동 5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87	길	부여		비응3길	飛鷹3路	비응도동 64	비응도동 64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88	길	부여		비응4길	飛鷹4路	비응도동 72	비응도동 69차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89	길	부여		비응5길	飛鷹5路	비응도동 48	비응도동 4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90	길	부여		비응안1길	飛鷹內1路	비응도동 42	비응도동 42	섬이름에	소룡동

								서수번호 사용	
191	길	부여		비응안2길	飛鷹內2路	비응도동 42	비응도동 42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92	길	부여		비응안3길	飛鷹內3路	비응도동 64	비응도동 64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93	길	부여		비응안4길	飛鷹內4路	비응도동 72	비응도동 4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94	길	부여		비응안5길	飛鷹內5路	비응도동 48	비응도동 4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95	길	부여		요죽5길	樂竹5路	소룡동 1654	오식도동 807	옛지명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96	길	부여		생말4길		오식도동 775	오식도동 516	옛지명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97	길	부여		분말4길		오식도동 792	오식도동 775	옛지명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98	길	부여		군장산단안 1길	群長産團 內1路	오식도동 824	소룡동 1655	지역명칭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199	길	부여		군장산단안 2길	群長産團 內2路	오식도동 858	소룡동 1655	지역명칭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200	길	부여		군장산단안 3길	群長産團 內3路	오식도동 859-37	소룡동 1672	지역명칭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201	길	부여		군장산단안 4길	群長産團 內4路	오식도동 861	오식도동 859-37	지역명칭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202	길	부여		군장산단9 길	群長産團 9路	비응도동 33	오식도동 848	지역명칭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203	길	부여		군장산단10 길	群長産團 10路	비응도동 33	오식도동 851	지역명칭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204	길	부여		군장산단11 길	群長産團 11路	비응도동 29	비응도동 33	지역명칭에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205	길	부여		자유무역1 길	自由貿易1 路	오식도동 520	오식도동 523	자유무역지역내 도로구 간으로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206	길	부여		자유무역2 길	自由貿易2 路	오식도동 519	오식도동 523	자유무역지역내 도로구 간으로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207	길	부여		자유무역3 길	自由貿易3 路	오식도동 523	오식도동 521	자유무역지역내 도로구 간으로 서수번호 사용	소룡동
208	길	변경	옥선북길	옥선길	玉仙路	옥봉리 184-102	옥봉리 1663	마을명칭 인용	미성동
209	길	변경	수송중앙로	동수송안길	東秀松內路	수송동 850	수송동 412-18	수송중앙로 단절	수송동
210	길	변경	동수송1길	동수송1길	東秀松1路	수송동 44-4	수송동 19-21	서수식 도로구간 설정	수송동
211	길	변경	동수송2길	동수송2길	東秀松2路	수송동 43-4	수송동 21-3	서수식 도로구간 설정	수송동
212	길	변경	동수송9길	동수송3길	東秀松3路	수송동 42-3	수송동 16-16	서수식 도로구간 설정	수송동
213	길	변경	동수송8길	동수송4길	東秀松4路	수송동 17-3	수송동 42-3	서수식 도로구간 설정	수송동
214	길	변경	동수송7길	동수송5길	東秀松5路	수송동 18-26	수송동 42-2	서수식 도로구간 설정	수송동
215	길	변경	동수송6길	동수송6길	東秀松6路	수송동 44-4	수송동 42-1	서수식 도로구간 설정	수송동
216	길	변경	동수송5길	동수송7길	東秀松7路	수송동 44-3	수송동 14-1	서수식 도로구간 설정	수송동
217	길	변경	동수송4길	동수송8길	東秀松8路	수송동 15-6	수송동 14-22	서수식 도로구간 설정	수송동

218	길	변경	동수송3길	동수송9길	東秀松9路	수송동 14-23	수송동 14-3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19	길	변경	수송중앙로	수송안길	秀松內路	수송동 42-9	수송동 858	수송중앙로단절	수송동
220	길	변경	수송안길	수송안1길	秀松內1路	수송동 875-7	수송동 49-10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21	길	변경	수송안9길	수송안2길	秀松內2路	수송동 48-4	수송동 49-11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22	길	변경	수송안7길	수송안3길	秀松內3路	수송동 47-13	수송동 49-16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23	길	변경	수송9길	수송안4길	秀松內4路	수송동 45-4	수송동 46-2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24	길	변경	수송안6길	수송안5길	秀松內5路	수송동 860-8대	수송동 45-9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25	길	변경	수송안5길	수송안6길	秀松內6路	수송동 20-28	수송동 45-10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26	길	변경	수송안4길	수송안7길	秀松內7路	수송동 47-2	수송동 45-14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27	길	변경	수송안3길	수송안8길	秀松內8路	수송동 20-3	수송동 17-1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28	길	변경	수송안2길	수송안9길	秀松內9路	수송동 49-1	수송동 17-2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29	길	변경	수송안1길	수송안10길	秀松內10路	수송동 19-24	수송동 17-3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수송동
230	길	변경	수송안길	수송안11길	秀松內11路	수송동 877-6	수송동 868-1대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주민의견수렴안	수송동

군산시 고시 제2009 - 51호

고 시

군산 도시관리계획(학교)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6. .

군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학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학 교	임피면 월하리 727번지 일원	294,819	-	294,819		면적 변경없이 세부시설 변경

2. 도시관리계획(학교) 조성계획 변경결정 내용

구 분	시설부지면적(m ²)			구성비 (%)	건축연면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증·감	
계	294,819	294,819	-	100.00	121,855	122,919	1,064	
교육기본 시설	57,111	57,147	36	19.38	83,161	84,225	1,064	
지원시설	60,454	60,454	-	20.51	36,804	36,804		
부속시설	6,412	6,412	-	2.17	1,890	1,890		
도로 및 주차장	82,393	83,085	692	28.18	-	-	-	
녹 지	88,449	87,721	△728	29.76	-	-	-	

3. 도시관리계획(학교) 조성계획 변경·결정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09-52호

고 시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해양경찰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주택과)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6.

군 산 시 장

1. 인 가 사 유 : 군산해양경찰서 이전에 따른 신축
2. 사업시행지 : (변경)
 - ▷ 당 초 : 군산시 금동 14-1번지 → 변 경 : 군산시 금동 14-1번지외 3필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군산해양경찰서)사업
 - 나. 명 칭 : 공공청사(군산해양경찰서) 신축공사
4. 사업의 개요(변경)
 - 가.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 면 적
 - ▷ 당 초 : 15,228.8㎡ → 변 경 : 15,908.0㎡(증679.2㎡)
 - 2) 규 모
 - ▷ 당 초 : 지상5층, 지하2층(건축면적2,672.78㎡ 건축연면적8,523.51㎡)
 - ▷ 변 경 : 지상5층, 지하2층(건축면적2,235.09㎡ 건축연면적7,730.60㎡)
5.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북 군산시 소룡동 9-9번지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해양경찰서장

6.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7. 2. 인가일 ~ 2009. 10. 31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 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군산시 금 동	14-1	대지	15,228.8	15,228.8	국 (해양경찰청)		-	-	-	
2		18	대지	12.6	12.6	국 (해양경찰청)					
3		19	대지	222.5	222.5	국 (해양경찰청)					
4		55-5	도로	444.1	444.1	국 (해양경찰청)					
합계		4필지		15,908.0	15,908.0						

8. 관계도서 : 실음생략

군산시 공고 제2009-1080호

공 고

- 1. 군산시 우진·신남전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 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 간내 우리시 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6. .

군 산 시 장

가. 정비구역지정(안)

① 정비구역지정 내역

지정구분	사업의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m)	비고
신 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우진·신남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군산시 나운동 588번지 일원	38,400	

- ② 지정사유 : 우진·신남전아파트는 준공 후 30년된 공동주택 단지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등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어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정비계획(안) 주요내용

- ① 토지이용 계획
-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③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관한 사항
- ④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다.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라.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 군산시청 건축과(2층)

마. 주민설명회 개최

① 개최일시 : 2009. 6. 18(목) 15 : 00

② 장 소 : 군산시 나운1동 주민자치센터(3층)

바. 관련도면 : 실음생략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063-450-4471)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09-1087호

공 고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09. 6. 15.
군 산 시 장

1. 위 치 :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58-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2) 명 칭 : 사회복지시설(구세군군산목양원)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면 적 : 8,000m²

2) 규 모 : 본관동 3개동(기존2동, 증축1동) 및 부속동 1개동(기존)

구 분	기 준	증 축	합 계	비 고
건축면적	630.15	693.70	1,345.55	-지 상 : 3층 -건폐율 : 16.81%
연 면 적	723.30	1,095.08	1,818.38	-용적율 : 22.72%

4. 사업시행자

1)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8-1번지

2) 성 명 :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08. 5. 2. ~ 2009. 6. 15.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군산시 공고 제2009-1094호

공 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9. 5. .

군 산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가. 사업시행지 : 구암동 327-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2) 명 칭 : 구암동 장독마을 연계도로(소로2-794, 소로3-278) 개설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도 로	소로 2-794	8	171	8	171.0	1,479	
도 로	소로 3-278	6	89	6	89.5	624	
소 계						2,103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9. 8. ~ 2011, 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450-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소로2-794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	구암동	327-2	도	53	6	최승조	군산시 구암동 369			
2	"	328-2	도	23	4	전북노회재단	전주읍 동정2정목 18			
3	"	327-1	대	615	39	최연봉	군산시 구암동 327-1			
4	"	328-4	대	109	109	김병호	군산시 구암동 328			
5	"	610	도	11,884	93	건설교통부				
6	"	328-3	대	694	43	김재형	군산시 조촌동903-1			
7	"	350	대	284	22	김민정	전주시 효자3가1461-8			
8	"	349-2	임	1,762	372	박노희 외 6인	군산시 경암동 641-1			
9	"	349-1	묘	1,431	220	박노희 외 6인	군산시 경암동 641-1			
10	"	343	대	228	10	고공식	군산시 구암동 344			
11	"	342	대	902	162	송춘례	군산시 구암동 342			
12	"	368-5	대	119	119	유태식	군산시 구암동 368			
13	"	368-2	대	132	2	전배호	군산시 구암동 638-2			
14	"	368-1	대	182	10	송주현 외 2인	이천 부발읍 아미리136-1			
15	"	369	대	420	176	이봉운	군산시 구암동 375			
16	"	370	대	185	35	채수창	인천 구월동 179-101			
17	"	371	대	388	57	최금산	군산시 구암동 371			
	합계				1,479					

소로3-278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5	구암동	610	도	11,884	354	건설교통부				
18	"	358-2	대	19,569	180	한국서부발전	서울시 삼성동167			
19	"	361-2	대	36	2	채수창	인천 구월동 179-101			
20	"	361-3	전	380	7	채용석 외 2인	인천 구월동 179-101			
21	"	361-5	도	46	4	김원식	군산시 구암동 361-1			
22	"	361-7	전	153	8	유영준	군산시 구암동 339			
23	"	361-1	대	422	7	심상규	군산시 구암동 384			
24	"	362-1	전	2,517	23	박남용	군산시 구암동 362-7			
25	"	362-8	전	3	3	박남용	군산시 구암동 362-7			
26	"	357-1	구	3,029	4	전북농조	이리시 평화동 56			
27	"	355-3	구	4,347	32	전북농조	이리시 평화동 56			
	합계				624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순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	구암동	327-1	건물	스레트	11.6㎡	최연봉	구암동 327-1			
2	"	328-4	건물	함석	136.3㎡	김병호	구암동 328			
3	"	328-3	건물	스레트	112.2㎡	김재형	조촌동 903-1			
4	"	349-2	건물	스레트	78.0㎡	박노희외6인	경암동 641-1			
5	"	349-1	건물	스레트	36.0㎡	박노희외6인	경암동 641-1			
6	"	342	건물	스레트	42.0㎡	송춘례	구암동 342			
7	"	368-5	건물	스레트 함석	41.6㎡	유태식	구암동 368			
8	"	368-2	건물	함석	26.6㎡	전배호	구암동 638-2			
9	"	369	건물	스레트	45.5㎡	이봉운	구암동 375			
10	"	369	건물	스레트	126.8㎡	이봉운	구암동 375			
11	"	370	건물	스레트	7.6㎡	채수창	인천시 구월동 179-101			
12	"	371	건물	스레트	90.3㎡	최금산	구암동 371			
13	"	361-3	건물	스레트 기와	87.0㎡	채용석외2인	인천시 구월동 179-101			
14	"	361-7	건물	스레트 슬래브	20.0㎡	유영준	구암동 339			
15	"		나무	은행나무	1주					
16	"		나무	감나무	5주					
17	"		나무	탱자나무	60주					
15	"		나무	가이즈까	3주					
16	"		나무	옥향	3주					
17	"		나무	소나무	2주					
18	"		한전주		4주					
19	"		체신주		4주					
20	"		가로등		2본					

군산시 공고 제2009-1110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일

군 산 시 장

소하천명	사업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점	종점	축제	호안	기타	착공	준공		
군둔천	군둔천 소하천 정비공사	나포 장상 895-6	나포 장상 267-1	1,200	2,400	구조물 4개소	2009. 3월	2011. 12월	재해예방	
남산천	남산천 소하천 정비공사	임피 보석 400	임피 보석 384	700	1,400	구조물 4개소	2009. 3월	2011. 12월	재해예방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지형도)
-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군둔천 소하천 정비시행계획

□ 시행계획의 개요

가. 위 치 :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일원

나. 사업량 : 소하천정비 L = 1.2km (축제 및 호안정비)

다. 총사업비 : 1,657백만원(공사비 1,432, 보상비 225)

라. 사업효과 : 소하천이 미개수되어 집중호우시 범람에 따른 침수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자연친화적 소하천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 제공

□ 세부정비시행계획

가. 명 칭 : 군둔천 소하천 정비공사

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재해위험이 산재한 미개수 소하천의 범람위험으로 인근 농경지 침수 및 인명피해 우려에 대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함

2) 사업개요

▷ 정비연장 : L=1.2km

▷ 사업규모

1) 축 제 공 - 절토 4,114m³, 성토 10,588m³

2) 호 안 공 - 생태복원매트 996m², 식생호안 4,509m²

3) 구조물공 - 일체RC교 1개소, 암거 3개소, 낙차보 8개소 등

다.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시청로 8)

라.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일

1) 착 수 : 2009. 2. 1.

2) 준공예정 : 2011. 12. 30.

마. 수용·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물건 조서

군둔천 소하천정비공사 편입토지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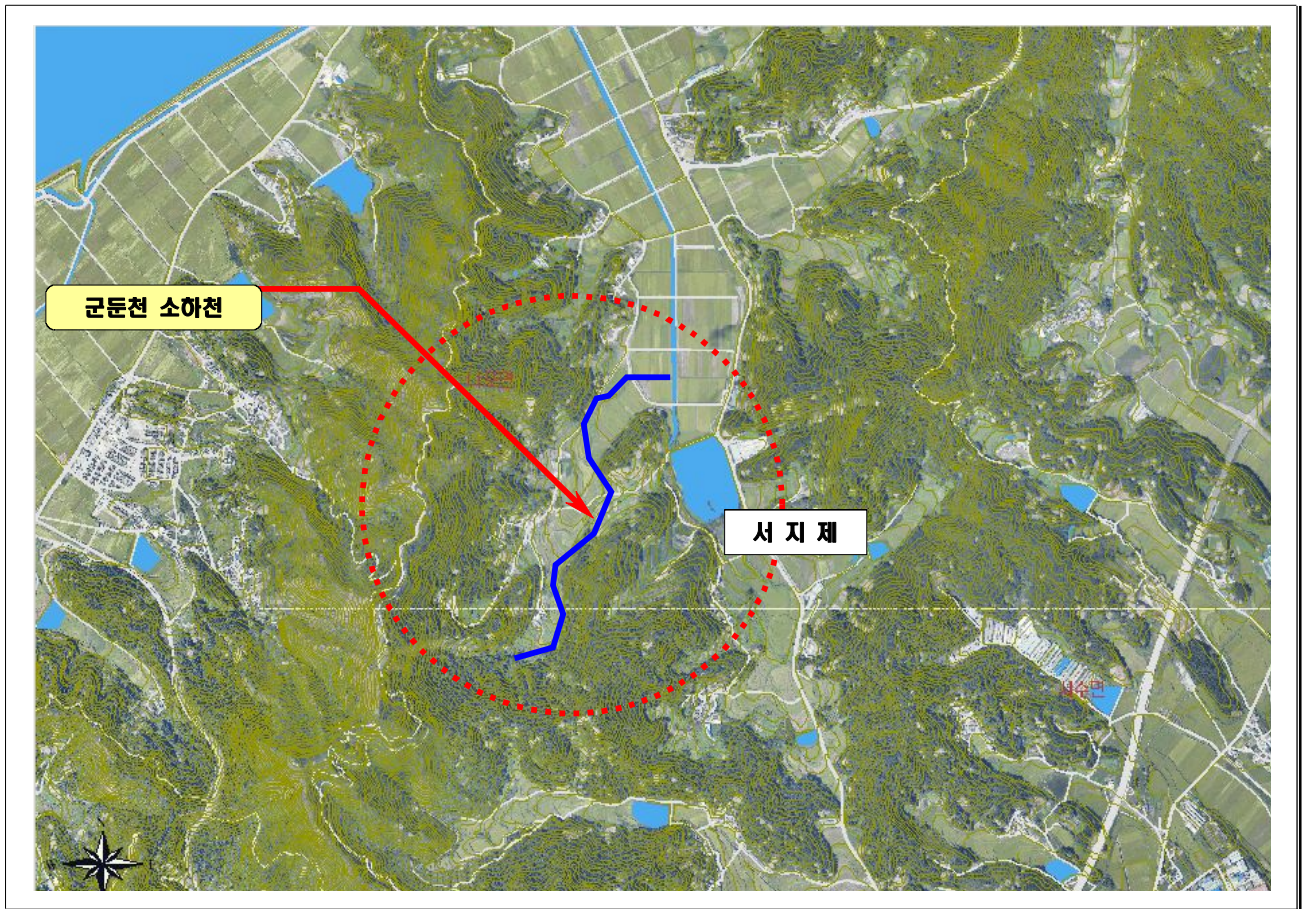
연 번	토지소재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권리권 기타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지목						
1	군산	-나포	장상	948	구	2378	2,136	농림수산부			
2	군산	나포	장상	897-4	답	3692	132	나포면 장상리 312	채순일		
3	군산	나포	장상	897-3	답	2473	41	나포면 장상리 312	채순일		
4	군산	나포	장상	897-2	답	1123	23	나포면 장상리810	김순임		
5	군산	나포	장상	897-1	답	639	15	나포면 장상리 810	김순임		
6	군산	나포	장상	897	답	2340	93	나포면 장상리 46	강세성		
7	군산	나포	장상	895-6	답	1987	60	나포면 장상리 478	안영권		
8	군산	나포	장상	895-5	답	2022	38	나포면 장상리 309	정복술		
9	군산	나포	장상	895-4	답	4027	35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57-17지층	장길재		
10	군산	나포	장상	895-3	답	1500	13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84-10 101호	장득재		
11	군산	나포	장상	895-2	답	2500	24	나포면 장상리 579-1	유병희 외7인		
12	군산	나포	장상	895-1	답	3508	37	나포면 장상리 49	이진무		
13	군산	나포	장상	921	구	5686	5	농림수산부			
14	군산	나포	장상	947	도	1662	136	농림수산부			
15	군산	나포	장상	854	도	3330	26	국			
16	군산	나포	장상	458-1	답	2043	123	장재동212 현대세솔 아파트101/1019호	윤봉래		
17	군산	나포	장상	946	구	1068	81	농림수산부			
18	군산	나포	장상	855	도	64	5	국			

연 번	토지소재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권리권 기타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지목						
19	군산	나포	장상	497	답	1542	125	나포면 장상리 478	조성영		
20	군산	나포	장상	498-2	답	1987	186	나포면 장상리 596	조상영		
21	군산	나포	장상	502	답	2648	239	나포면 장상리 383	김형민		
22	군산	나포	장상	499	답	3765	265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446-1	이환		
23	군산	나포	장상	501-1	답	717	50	서울시서대문구북가좌동 149-30신옥주택102호	강근호		
25	군산	나포	장상	500	답	1445	594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41-95	이동운		
26	군산	나포	장상	458-2	답	2235	6	장재동212 현대세슬 아파트101동1019호	윤봉례		
27	군산	나포	장상	457-1	전	962	8	나포면 장상리 478	안영권		
28	군산	나포	장상	산355- 5	임	1343	7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1051-22	송창완		
29	군산	나포	장상	447-1	답	2555	105	나포면 옥곶리 581	김현태 외 2인		
30	군산	나포	장상	846-8	구	22947	238	농림수산부			
31	군산	나포	장상	446	답	1388	499	나포면 장상리 838	대한불교 조계종불 국사		
32	군산	나포	장상	443	답	1174	14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424-5삼성빌라2층	변장열		
33	군산	나포	장상	442-1	답	2936	396	임피면 영창리555	백순철 외6인		
34	군산	나포	장상	441-1	답	2391	547	나포면 장상리 428	김종훈		
35	군산	나포	장상	441-3	구	278	21	나포면 장상리 65	이석준		
36	군산	나포	장상	423-1	답	3967	1077	나포면 장상리 530-8	최민호 외1인		
37	군산	나포	장상	423-5	구	198	198	강호정 11-2	김정숙		
38	군산	나포	장상	산249	임	13388	80	미원동 294	노석규		
39	군산	나포	장상	413	답	3656	70	나포면 장상리 801	김종원 외4인		
40	군산	나포	장상	423-2	답	2410	224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684	김종환 외1인		
41	군산	나포	장상	423-4	답	1656	53	나포면 장상리 428	김종훈		

연 번	토지소재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권리권 기타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지목						
42	군산	나포	장상	421-2	답	598	30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73 명진로알맨션2차아파트 101동 1103호	김성수		
43	군산	나포	장상	421-3	답	2340	203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73 명진로알맨션2차아파트 101동 1103호	김성수		
44	군산	나포	장상	280	답	2340	279	나포면 장상리 428	김중훈		
45	군산	나포	장상	414	답	863	145	나포면 장상리 428	김중훈		
46	군산	나포	장상	857	도	645	70	건설교통부			
47	군산	나포	장상	415	전	1898	104	나운동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203동1001호	송명자		
48	군산	나포	장상	420	전	291	3	경북 구미시 형곡동 169-12 진안아파트 103동201호	김봉연		
49	군산	나포	장상	산254-1	임	659	64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73 명진로알맨션2차아파트 101동 1103호	김성수		
50	군산	나포	장상	281	전	764	13	신광동 778-4	박중성		
51	군산	나포	장상	276-2	답	969	462	대명동138-184	박순여		
52	군산	나포	장상	275	답	2050	104	나포면 억곤히433-1	김은수 외2인		
53	군산	나포	장상	산254-4	임	11306	152	나운동156-3 영창아파트106동408호	김경환 외5인		
54	군산	나포	장상	274	답	8579	770	나포면 서포리392	평산조 씨충정 공파 의송음 공파		
55	군산	나포	장상	271	답	1745	311	나포면 장상리 839-1	박순여		
56	군산	나포	장상	산256	임	13587	166	문화동26 삼성아파트 6동1208호	이생규 외2인		
57	군산	나포	장상	27	답	3183	177	나포면 장상리 804	황윤목		
58	군산	나포	장상	267-1	답	3150	460	신영동 65	설등용 외5인		

※ 지장물건 소유자(관계인)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관계인)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바. 위 치 도



사. 실시설계도서 : 별첨

아. 예정공정표

공종	보합 (%)	공 사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공정
		90일	180일	270일	360일	450일	540일	630일	720일	810일	900일	990일	1,080일	
1. 축제공	36.0													36.0
		4.0	4.0	4.0	4.0	4.0	4.0	3.0	3.0	3.0				
2. 호안공	53.0													53.0
					5.5	5.5	5.5	5.5	5.5	6.5	6.5	6.5	6.0	
3. 구조물공	3.0													3.0
							0.5	0.5	0.5	0.5	0.5	0.5		
4. 포장공	1.0													1.0
							0.3	0.3	0.4					
6. 부대공	7.0													7.0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1.0	1.0	
계	100.0	4.5	4.5	4.5	1.0	1.0	10.8	9.8	9.9	10.5	10.5	8.0	7.0	
누 계	-	4.5	9.0	13.5	23.5	33.5	44.3	54.1	64.0	74.5	85.0	93.0	100.0	

자.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도 비	시 비	비 고
합 계	1,657	600	200	857	
2009	257	0	0	257	
2010	600	250	100	250	
2011	800	350	100	350	

차.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제방, 호안, 보, 수문 등)의 유지관리는 소하천구역(예정지) 지정 해제시까지 군산시장이 관리함

카. 발생예상 폐천부지의 면적 : 해당없음

타.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에 관한 사항 등

- ▷ 군둔천 소하천은 유역면적 1.18km², 유로연장 1.20km로 망해산 동부 임야 유역에서 시작되어 급한 하상경사(0.045)를 갖고 있어 잦은 제방유실로 법면이 콘크리트로 호안처리되어있어, 금회 환경친화적인 법면보호공의 개선이 필요함
- ▷ 하천현황은 치수적으로 계획하폭 및 통수단면이 부족하며, 경관적으로 직강화의 경직된 하천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연사면의 식생상태가 불량하고, 친수적으로 이용 공간이 협소하고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음
- ▷ 금번 사업은 하폭확장을 통한 적정 계획하폭 및 통수단면 확보로 홍수방어하고 호안을 식재 및 식생 호안 설치하여 경관성을 복원하고 생태계 보전 등 하천 환경적 측면도 고려하여 콘크리트계 사용을 지양하고 환경호안을 적용하였음

파. 소하천 부속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

- ▷ 제방은 기 형성 제방고가 매우낮고, 하폭이 협소하여 우기 시 잦은 범람이 발생하여 기 형성된 제방을 B=10~16m로 확장하고 제방고를 H=0.6m이상 높여 형성계획임
- ▷ 호안은 자연형 소하천으로 계획하고자 제외지에는 식생호안 및 식생매트를 사용하여 조성하고 제내지는 씨드스프레이 공법을 적용하였음
- ▷ 군둔천은 경사가 급하여 유속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낙차보를 설치토록 하였음

붙임 : 실시설계 도서 각 1부. 끝.

군둔천 소하천 정비시행계획

□ 시행계획의 개요

가. 위 치 :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일원

나. 사업량 : 소하천정비 L = 1.2km (축제 및 호안정비)

다. 총사업비 : 1,657백만원(공사비 1,432, 보상비 225)

라. 사업효과 : 소하천이 미개수되어 집중호우시 범람에 따른 침수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자연친화적 소하천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 제공

□ 세부정비시행계획

가. 명 칭 : 군둔천 소하천 정비공사

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재해위험이 산재한 미개수 소하천의 범람위험으로 인근 농경지 침수 및 인명피해 우려에 대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함

2) 사업개요

▷ 정비연장 : L=1.2km

▷ 사업규모

1) 축 제 공 - 절토 4,114m³, 성토 10,588m³

2) 호 안 공 - 생태복원매트 996m², 식생호안 4,509m²

3) 구조물공 - 일체RC교 1개소, 암거 3개소, 낙차보 8개소 등

다.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시청로 8)

라.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일

1) 착 수 : 2009. 2. 1.

2) 준공예정 : 2011. 12. 30.

마. 수용·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물건 조서

군둔천 소하천정비공사 편입토지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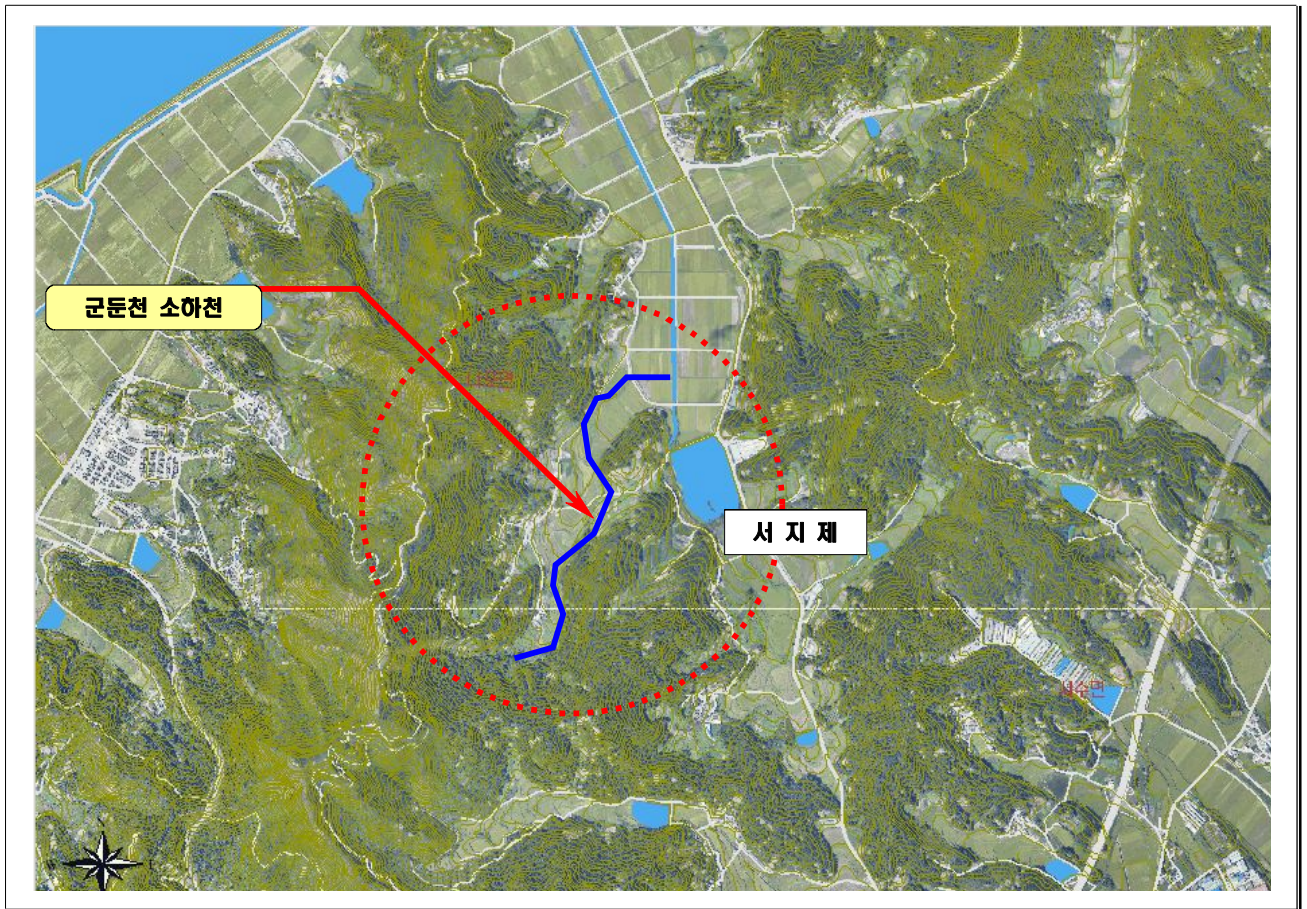
연 번	토지소재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권리권 기타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지목						
1	군산	-나포	장상	948	구	2378	2,136	농림수산부			
2	군산	나포	장상	897-4	답	3692	132	나포면 장상리 312	채순일		
3	군산	나포	장상	897-3	답	2473	41	나포면 장상리 312	채순일		
4	군산	나포	장상	897-2	답	1123	23	나포면 장상리810	김순임		
5	군산	나포	장상	897-1	답	639	15	나포면 장상리 810	김순임		
6	군산	나포	장상	897	답	2340	93	나포면 장상리 46	강세성		
7	군산	나포	장상	895-6	답	1987	60	나포면 장상리 478	안영권		
8	군산	나포	장상	895-5	답	2022	38	나포면 장상리 309	정복술		
9	군산	나포	장상	895-4	답	4027	35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57-17지층	장길재		
10	군산	나포	장상	895-3	답	1500	13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84-10 101호	장득재		
11	군산	나포	장상	895-2	답	2500	24	나포면 장상리 579-1	유병희 외7인		
12	군산	나포	장상	895-1	답	3508	37	나포면 장상리 49	이진무		
13	군산	나포	장상	921	구	5686	5	농림수산부			
14	군산	나포	장상	947	도	1662	136	농림수산부			
15	군산	나포	장상	854	도	3330	26	국			
16	군산	나포	장상	458-1	답	2043	123	장재동212 현대세솔 아파트101/1019호	윤봉래		
17	군산	나포	장상	946	구	1068	81	농림수산부			
18	군산	나포	장상	855	도	64	5	국			

연 번	토지소재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권리권 기타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지목						
19	군산	나포	장상	497	답	1542	125	나포면 장상리 478	조성영		
20	군산	나포	장상	498-2	답	1987	186	나포면 장상리 596	조상영		
21	군산	나포	장상	502	답	2648	239	나포면 장상리 383	김형민		
22	군산	나포	장상	499	답	3765	265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446-1	이환		
23	군산	나포	장상	501-1	답	717	50	서울시서대문구북가좌동 149-30신옥주택102호	강근호		
25	군산	나포	장상	500	답	1445	594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41-95	이동운		
26	군산	나포	장상	458-2	답	2235	6	장재동212 현대세슬 아파트101동1019호	윤봉례		
27	군산	나포	장상	457-1	전	962	8	나포면 장상리 478	안영권		
28	군산	나포	장상	산355- 5	임	1343	7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1051-22	송창완		
29	군산	나포	장상	447-1	답	2555	105	나포면 옥곶리 581	김현태 외 2인		
30	군산	나포	장상	846-8	구	22947	238	농림수산부			
31	군산	나포	장상	446	답	1388	499	나포면 장상리 838	대한불교 조계종불 국사		
32	군산	나포	장상	443	답	1174	14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424-5삼성빌라2층	변장열		
33	군산	나포	장상	442-1	답	2936	396	임피면 영창리555	백순철 외6인		
34	군산	나포	장상	441-1	답	2391	547	나포면 장상리 428	김중훈		
35	군산	나포	장상	441-3	구	278	21	나포면 장상리 65	이석준		
36	군산	나포	장상	423-1	답	3967	1077	나포면 장상리 530-8	최민호 외1인		
37	군산	나포	장상	423-5	구	198	198	강호정 11-2	김정숙		
38	군산	나포	장상	산249	임	13388	80	미원동 294	노석규		
39	군산	나포	장상	413	답	3656	70	나포면 장상리 801	김종원 외4인		
40	군산	나포	장상	423-2	답	2410	224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684	김중환 외1인		
41	군산	나포	장상	423-4	답	1656	53	나포면 장상리 428	김중훈		

연 번	토지소재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자 권리권 기타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지목						
42	군산	나포	장상	421-2	답	598	30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73 명진로알펜션2차아파트 101동 1103호	김성수		
43	군산	나포	장상	421-3	답	2340	203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73 명진로알펜션2차아파트 101동 1103호	김성수		
44	군산	나포	장상	280	답	2340	279	나포면 장상리 428	김중훈		
45	군산	나포	장상	414	답	863	145	나포면 장상리 428	김중훈		
46	군산	나포	장상	857	도	645	70	건설교통부			
47	군산	나포	장상	415	전	1898	104	나운동527 나운2차 현대아파트203동1001호	송명자		
48	군산	나포	장상	420	전	291	3	경북 구미시 형곡동 169-12 진안아파트 103동201호	김봉연		
49	군산	나포	장상	산2541	임	659	64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73 명진로알펜션2차아파트 101동 1103호	김성수		
50	군산	나포	장상	281	전	764	13	신평동 778-4	박중성		
51	군산	나포	장상	276-2	답	969	462	대명동138-184	박순여		
52	군산	나포	장상	275	답	2050	104	나포면 억근히433-1	김은수 외2인		
53	군산	나포	장상	산2544	임	11306	152	나운동156-3 영창아파트106동408호	김경환 외5인		
54	군산	나포	장상	274	답	8579	770	나포면 서포리392	평산조 씨충정 공파 의송음 공파		
55	군산	나포	장상	271	답	1745	311	나포면 장상리 839-1	박순여		
56	군산	나포	장상	산256	임	13587	166	문화동26 삼성아파트 6동1208호	이생규 외2인		
57	군산	나포	장상	27	답	3183	177	나포면 장상리 804	황윤목		
58	군산	나포	장상	267-1	답	3150	460	신영동 65	설등용 외5인		

※ 지장물건 소유자(관계인)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관계인)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바. 위 치 도



사. 실시설계도서 : 별첨

아. 예정공정표

공종	보할 (%)	공 사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공정
		90일	180일	270일	360일	450일	540일	630일	720일	810일	900일	990일	1,080일	
1. 축제공	36.0	4.0	4.0	4.0	4.0	4.0	4.0	3.0	3.0	3.0				36.0
2. 호안공	53.0				5.5	5.5	5.5	5.5	5.5	6.5	6.5	6.5	6.0	53.0
3. 구조물공	3.0						0.5	0.5	0.5	0.5	0.5	0.5		3.0
4. 포장공	1.0						0.3	0.3	0.4					1.0
6. 부대공	7.0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1.0	1.0	7.0
계	100.0	4.5	4.5	4.5	1.0	1.0	10.8	9.8	9.9	10.5	10.5	8.0	7.0	
누 계	-	4.5	9.0	13.5	23.5	33.5	44.3	54.1	64.0	74.5	85.0	93.0	100.0	

자.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도 비	시 비	비 고
합 계	1,657	600	200	857	
2009	257	0	0	257	
2010	600	250	100	250	
2011	800	350	100	350	

차.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제방, 호안, 보, 수문 등)의 유지관리는 소하천구역(예정지) 지정 해제시까지 군산시장이 관리함

카. 발생예상 폐천부지의 면적 : 해당없음

타.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에 관한 사항 등

- ▷ 군둔천 소하천은 유역면적 1.18km², 유로연장 1.20km로 망해산 동부 임야 유역에서 시작되어 급한 하상경사(0.045)를 갖고 있어 잦은 제방유실로 법면이 콘크리트로 호안처리되어있어, 금회 환경친화적인 법면보호공의 개선이 필요함
- ▷ 하천현황은 치수적으로 계획하폭 및 통수단면이 부족하며, 경관적으로 직강화의 경직된 하천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연사면의 식생상태가 불량하고, 친수적으로 이용 공간이 협소하고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음
- ▷ 금번 사업은 하폭확장을 통한 적정 계획하폭 및 통수단면 확보로 홍수방어하고 호안을 식재 및 식생 호안 설치하여 경관성을 복원하고 생태계 보전 등 하천 환경적 측면도 고려하여 콘크리트계 사용을 지양하고 환경호안을 적용하였음

파. 소하천 부속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

- ▷ 제방은 기 형성 제방고가 매우낮고, 하폭이 협소하여 우기 시 잦은 범람이 발생하여 기 형성된 제방을 B=10~16m로 확장하고 제방고를 H=0.6m이상 높여 형성계획임
- ▷ 호안은 자연형 소하천으로 계획하고자 제외지에는 식생호안 및 식생매트를 사용하여 조성하고 제내지는 씨드스프레이 공법을 적용하였음
- ▷ 군둔천은 경사가 급하여 유속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낙차보를 설치토록 하였음

붙임 : 실시설계 도서 각 1부. 끝.

군산시 공고 제 2009-1158호

2009년 사업소세 분야 기간제근로자 선발 시행계획 공고

군산시 세무과에서 근무할 재산할 사업소세 일제조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일
군 산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담당부서 및 예정근무처	채용분야	채용인원
세 무 과	재산할 사업소세 일제조사 행정보조 업무	1명

2. 근무조건

-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나. 계약기간 : 2009년 7. 1 ~ 8. 31까지
- 다. 보 수 : 일급 35,000원(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불가)
-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마. 근 무 지 : 군산시청 세무과

3. 응시자격 및 우선선발조건

- 가. 지방세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성실한 자
- 나.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이 가능한 자
- 다. 만 35세 이하 고졸이상 미취업자(1974. 1.1 이후 출생자)
- 라. 공고일('09.6.15)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내인 자
- 마.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시험방법 및 일정

- 가. 서류전형 : 응시원서 제출서류에 의거 서류심사
 - 합격자 개별통보 : 2009. 6. 26일 한

5. 공고 및 원서접수

- 가. 공고기간 : 2009. 6. 15 ~ 6. 19
 나. 접수기간 : 2009. 6. 15 ~ 6. 19 18:00까지
 다. 접수처 : 군산시 세무과 사무실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붙임】 참조
 나. 주민등록표등본 1부
 다. 최종졸업증명서 1부
 라. 경력증명서 및 각종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이번 사업소세 관련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담당(☎450-4297, 450-6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성요령》

- ① 채용분야 및 접수번호 : 채용분야는 응시자가 직접 기재, 접수번호는 미기재
- ② 주 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③ 학 력 : 졸업 외에 재학·휴학·수료·중퇴인 경우도 기재
- ④ 경 력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⑤ 자격·어학 : 해당 자격증명 또는 어학성적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및 어학성적 사본 제출
- ⑥ 우대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기재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〇〇〇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〇〇〇분야에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2009. 6. .

작 성 자 : 〇 〇 〇

군산시 공고 제 2009-1166호

공 고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부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제정 내용

- 요금등의 감면 -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등 구체적인 기준마련 (시행규칙안 제37조)
- 수도요금의 할인 -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요금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일부 할인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시행규칙안 제38조)
- 포상금 지급 - 부정급수 적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법 절차 등 구체적 기준 마련 (시행규칙안 제41조)
- 급수관공사비의 지원 -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시행규칙안 제43조)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군산시상수도급수사용료과징사무처리규칙 폐지 (부칙 제2조)

3. 의 견 제 출

-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7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수도과 [전화(063)450-4522 팩스(063)452-8177]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관리담당 김홍식 [전화(063)450-4522] , 담당자 김주희 [전화(063)450-45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안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 급수설비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가 자가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3. "검침원"이란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검침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5.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저소득 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한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저소득 주민, 재해 및 재난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수용소, 긴급 공공시설등에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급수공

사 승인은 신청접수 후 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불출지구라고 인정할 때
 - ② 시장은 급수 사정상 다음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 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서 기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사설 공용수도 와 소화전에서의 분기승인한 때. 다만, 시장이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 ④ 급수관의 구경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급수공사 승인 후 조례 제7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 공사비, 수수료 등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승인 및 납입 고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급수신청자가 공사비등을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급수공사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 신청자에게 당해 급수공사의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공사비등의 변동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보조수도 미터기 설치) ① 조례 제7조제5항에 의한 보조수도계량기 설치 신청은 다음 경우에 한한다.

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로서 3개 업종 이상 사용하는 급수장치
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경우
- ②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설비는 기존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설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명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사설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설공용 급수설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신청서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 및 지적도
3.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
4.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 인구수
5. 급수설비 기부확약서

제7조(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 위탁시공을 위한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위탁시공을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 조례·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행정지시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공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급수공사 및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범위는 조례 제3조와 제11조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단,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그 본 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통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③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설계 및 준공카드를 정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공사비 산출) 조례 제12조제1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건설부 표준단가에 의한다.

제11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관내 모든 수납 대행점에서 납부하거나, 수납대행점 계좌로 송금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송금표를 납부영수증으로 한다.

제12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도급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도급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도급자가 이에 불응할 때에는 도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급수공사 도급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④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누수량에 일반용 요율의 최고치를 적용하여 도급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급 수

제13조(수도계량기 설치위치) 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등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에 인접한 위치에 설치한다.
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공지 상에 설치한다.

②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급수업종 변경)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은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급수업종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급수업종이 상이하거나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은 그달 말일까지 이루어진 신고, 직권조사 보고분에 대하여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④ 급수업종 변경신청서 또는 처리결과는 변경된 처리부에 등재하고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 수전번호) ① 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는 즉시 수도전신설대장에 등재하고 읍·면·동별 고유번호에 그 대장 등재순위 번호를 당해 수전의 수전번호라 한다.

② 수전번호는 일제 정비시나 점검순위 재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 변경할 수 없다.

③ 수전번호 신설대장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수전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서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제16조 (급수설비의 관리)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 사용자 등은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설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 개시 전일까지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 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 사용자수가 제3조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전용급수설비로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17조 (급수의 중지와 폐전) ① 조례 제2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서 “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례 제21조제2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2.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② 급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장치를 철거할 때에는 체납액을 정산하게 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즉시 강제징수 조치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③ 급수 사용자의 신청 없이 건물 철거로 급수장치가 방치되었을 때에는 당해 사실을 발견 즉시 철거 회수하고 중지 또는 폐전 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중지와 동시에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④ 폐전 또는 중지 수전의 급수 사용료 조정은 폐전 또는 중지신청서 접수일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분으로 조정한다.

⑤ 조례 제17조와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개전신청) ①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전신청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정수 처분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수납부 및 검침카드에 그 사유, 일시, 지침을 명기 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19조(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조례 제23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공익용 급수설비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급수 사용자수가 제3조의 기준에 미달될 시 업종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 사용자 등에게 보조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 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20조(계량기 검침)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급수전의 계량기 검침)은 구역별 가구별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검침할 수 있다.

②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량기 봉인상태의 이상 유무
2. 계량기 정상 회전 여부
3.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
4. 요금 체납상황 확인
5. 기타 필요한 사항(누수, 계량기 미부착, 부정사용 등)

제21조(요금 부과) ① 요금은 급수사용량에 의거 조정한다.

② 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 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차인한 사용량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당월분 사용량에 급수 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당월분 급수 사용료로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수장치가 폐전될 때
2. 급수 중지를 하고자 할 때
3. 수용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산 우려가 있을 때

⑥ 조례 제26조에 따라 인정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계량기 지침정지, 비정상회전, 문자불명, 침 탈락, 수포, 동파로 인한 유리파손, 계량기 교체 등의 급수전에 대하여 사용량을 정상적으로 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 사용 실적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전월사용 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때에는 정상으로 인정되는 전 3개월간의 평균 조정실적으로 인정하고 원수에 있어서는 총 생산량에서 타업체의 사용한 량을 차인한 량을 당해 업체에 조정할 수 있다.
2. 계량기의 지중, 매몰, 망실, 장애물 적치, 침수,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현장 위험상황, 기타 계량기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 사용 실적 또는 전 3개월 사용 실적 중 최고의 량으로 인정 조정이 가능하며 다만, 최고 량이 누수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정상으로 인정되는 전 3개월간의 평균 조정실적으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예시) ※ 부과방법

- 계량기 고장, 불회전시(전월 3개월 평균)

$$(22 + 29 + 22) \div 3 = 24 \text{ (세제곱미터 단위로 부과)}$$

- 계량기 교체시

가. 철거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 미 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 사용량 (현 지침 - 부설지침)

나. 철거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전월 3개월 평균(전례와 같음)

다. 현 지침 - 부설지침 = 교체후 사용량

$$\text{교체후 사용량} \div \text{교체시부터 검침일수} \times 1\text{개월} = \text{총 사용량}$$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다음 검침 때 계산한다. 다만, 지침이 정지된 계량기는 예외로 한다.

⑧ 인정 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의무 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검침이 가능할 때까지 조례 제36조에 의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⑨ 계량기 미설치 급수량 조정은 가정용에 대하여는 1명당 월 5세제곱미터로 한다. 기타 업종으로서 조례 제31조제2항 별표 제8호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당해업종에 유사한 업태별 급수시간과 조례 제31조제2항 별표 제7호의 구경별 출수량을 적용하여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계량기 관리) ①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검침원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거나 지침 등 확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체 요구서를 구역별 검침완료시까지 제출하여 보수반에 교체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보수반은 5일 이내에 고장 계량기를 교체하고 작업소표를 작성하여 급수카드, 검침카드 및 수납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량기 교체수전은 교체작업 소표의 내용에 의거 검침카드 및 수납부에 교체일자, 신규 계량기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용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계량기 시설봉인) 계량기의 시설봉인은 필요에 따라 연결부분 양쪽에 봉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봉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4조(벤추리 메타 양수기) 사비로 설치한 벤추리 메타 양수기는 이상이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6조(부정급수전 처리) ① 부정급수전은 발견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공사는 공사 시행자를 조사 확인하여 시인서를 징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급수전은 과태료 추징금의 고지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위반사항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27조(다세대, 공동주택 가구수 및 주계량기 계산방법) ① 조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입주가구 수 확인은 주민등록 등재가구 수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납입내역 등에 의한 사용 호수가 확인될 때에는 이를 인정 적용한다.

②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을 각각 부과하는 다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 계산은 총사용량에서 세대별 사용량을 합산한량을 빼고 남은량에 단계요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주계량기 요금을 총세대수로 나눈 금액을 공동요금으로 하여 세대별 사용요금과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개시조정) ① 신설 급수전의 개시조정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기를 점검하고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조정한다.

제29조(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7조제3항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사용량을 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 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 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분담금 금액은 원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수도 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청구하여야 한다.

제31조(가산금) 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수도사용료 가산금 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주 체납액이 속하는 년도에 가장 한다.

③ 조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기가 1개월 이내 경과된 요금을 연체금이 가산된 납기후 금액으로 수납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과납된 금액은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으로 정산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면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부대 및 주한유엔군 부대
2. 납부 연장을 받은 공공기관

제32조(고지 및 송달 방법) ① 조례 제30조 규정의 납부고지서 서식은 전산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

③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등의 송달은 검침과 동시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직접 전달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의 부재시에는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함이 없을 경우 수도사용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야 한다.

⑤ 수도사용자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등의 우편송달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3조(수납기관)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급수사용료 기타 모든 수입금은 군산시 금고와 수납대행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제34조(수납소인) ① 수입금의 수납소인은 수납일계전에 편철된 군산시 금고와 수

납대행처의 납입필통지서에 의한다.

② 수납부에 수납소인을 할 때에는 당해 납입필 통지서와 동일자로 수납소인을 하여야 한다.

③ 수납소인은 수납일자 소인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현년도 분은 현년도 대장에 과년도 분은 이월액 정리부에 소인한다.

제35조(임시급수) ① 조례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때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 기존급수설비를 일반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기간을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36조(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해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2조제2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감면
가.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적용

2.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누수요금의 적용

가.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지하, 벽체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발생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에 대하여는 당해 업종의 최초요금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자동개폐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수도꼭지 등 누수부분은 제외한다. 단, 감면적용 기간은 직전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누수요금의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기타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누수요금적용신청서
- 2) 누수공사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
- 3)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4) 기타 필요시 관계서류 등

3. 조례 제3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은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4.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신청자 : 가정용 10세제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

나. 소년·소녀 가장세대 중 신청자 : 가정용 10세제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자 중 신청자 : 가정용 10세제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한다.

라.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수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 또는 지원한다.

마. 좋은 식단체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써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 또는 지원한다. 단, 감면 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시장이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나.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의 경우 수도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의 감면적용은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확보하는 일반회계 예산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료 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용가에 대해 수도요금에서 월3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검침원이 점검하였을 때 자가 검침내용이 적정치 않을 경우에

는 다음달 납기분에 계산하고 검침원이 직접 검침한다.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자동이체 한 고지서의 수도사용료(구경별 요금제외)의 1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금액은 5,000원 한도 이내로 한다.

제5장 관 리

제39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① 조례 제36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세대가 1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 허가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 지역 주민 대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 운영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3. 임원 및 회원명부
4. 설계도서 및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로 무상약정)설정 등기 신청서류
5.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및 각서
6.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권리증
7. 등기촉탁승낙서 및 기타 등기 또는 권리취득에 필요한 서류

제40조(특수가압 시설의 운영) ① 특수가압 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 일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갱신이 있을 때에는 대표자는 10일 이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운영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⑤ 특수가압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운영위원회로부터 매 회계년도 수지결산서 및 수지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호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분기별 1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품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지급한다.

1. 관경 300밀리미터 이상 : 5만원 상당의 물품

2. 관경 100밀리미터 이상 : 3만원 상당의 물품

3. 관경 50밀리미터 이상 : 2만원 상당의 물품

4. 급수관으로서 계량기 이전관 : 1만원 상당의 물품

③ 시장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품)을 신고자에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처리 및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군산시 예규(지침)으로 정한다.

제43조(급수관공사비의 지원) ① 조례 제5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소유 단독주택

3. 「임대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4. 전용면적 45제곱미터 미만 공동주택

5.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 다가구주택

② 조례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낡은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00만원 (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

2. 낡은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80만원 (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40만원)

3.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적용

③ 조례 제54조제4항의 공사비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

2.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④ 급수관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2. 학교
 3.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소유 단독주택
 4. 「임대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5. 전용면적 45제곱미터 미만 공동주택
 6.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 다가구주택
 7. 기타 접수순
- ⑤ 조례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관의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군산시상수도급수사용료과징사무처리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승인 및 납입고지서

번	호	군산시	읍면동	리	번지
		납 부 자			
합 계		금 원			
신 설 공 사 수 입	자 재 대				
	계량기대금				
	시 공 비				
개 조 공 사 수 입	자 재 대				
	시 공 비				
수 수 료 수 입	수 수 료				
시설분담금 수 입	분 담 금				

1. 귀하가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승인처리 되었으며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납입금액을 산정하고,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비 납부를 통보하오니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신청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20 년 월 일
 - 납부장소 : 농협 군산시청 출장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군산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관리자
(수도과 급수담당 불입용)

[별지 제2호서식]

시설공용 급수설비신청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시설 공용급수 설비 설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대표자 :

인

수익자주소	성명	가족수	서약인
읍·면·동 리 번지			
읍·면·동 리 번지			
읍·면·동 리 번지			
읍·면·동 리 번지			
읍·면·동 리 번지			

- 붙임 : 1.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급수설비 기부 확약서

군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

=====

- 1. 급수전소채지 : 번지
- 2. 소 유 자 :
- 3. 수 전 번 호 : 제 호
- 4. 현 급수업종 :
- 5. 변경 후 급수업종 :
- 6. 변 경 사 유 :

위와 같이 수도급수 종별을 변경하고자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직권업종변경신고서

수도전 소재지	급수전 번호	수도전 소유자	종 별		변경사유 급수실태
			현업종	변경업종	

상기와 같이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7조제1항제4호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수도관계 직원

직 :

성 명 :

인

군 산 시 장 귀 하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	수도전 대장 정리	조정부 정리	검침 카드 정리	수납 체납부 정리	결 재		
					계	담당	과장

[별지 제6호 서식]

정수
 폐전
 개전

급수전 신고서

수전번호		업종		구경	mm
주소(위치)	군산시				
수용가성명			수용가번호		
정수 폐전	수도 사용 개시 일자				
	수도 정수, 폐전 일자				
정수, 폐전, 개전 사유					
개전	정수년월일				
	체납액	원	개전수수료	원	

위 급수전에 대하여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7조,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약도 : 뒷면]

200 년 월 일

- 주 소 : 군산시
- 신고인 성명 : (인) 관 계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군산시장 귀하

처 리 사 항			
계 량 기	개전, 정수, 폐전일자		
정수, 폐전, 개전	담 당 자		
조치사항	계량기 번호	지침 :	
수 납 부 정 리		대장정리	검침부정리
전 산 담 당	담 당 자		

[별지 제7호서식]

고 장 계 량 기 교 체 요 구 서

접수번호: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중 발견한 고장 계량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체 요구 합니다.

주 소	군산시					성 명	
						전화번호	
수전 번호		업 종	가정	규 격	13	전월지침	
계량기번호				고장사유		금월지침	

2009 년 월 일

직 성명 (인)

담당자	담당(요금)	과 장	결
			재

군산시장 귀하

약 도

※ 현장 민원 노후 계량기

교체수용가확인	년 월 일	(인)	부재중, 공가
---------	-------	-----	---------

계 량 기 교 체 결 과

교 체 일 자	2009년 월 일		교 체 자	호
교 체 내 용	구 계량기번호		지 침	
	신 계량기번호		지 침	
계량기 처분	반납,보수,훼손,분실,기타			
급수카드정리	(인)	검침부 정리	(인)	

위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직 성명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월분 수도사용료가산금조정내역서

급수 번호	업종	납 부 자		월분	고 지 금 액			가산금내역		합계
		주소	성명		사용료	손료	계	가산금	중(중) 가산금	
종 별 소 계				건수						
합계										

[별지 제11호서식]

누수요금적용신청서

담당자	담당 (요금)	과 장	소 장	결 재

수 용 가	주 소	군산시 읍.면.동 번지		
	성 명		전화 번호	
	수용가 번호 (수전 번호)		업 종	
신 고 내 용	누수 기간			
	누수 위치			
	누수 원인			
	누수공사 완료일		누수공 사 업 체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누수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누수요금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화번호 :

군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공사대금지급영수증(세금계산서)
2. 기타 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사확인서, 사진 등)

[별지 제13호서식]

포상금(품) 지급 신청서

적발 또는 제보자		처분금액	포상금액	비고
주소	성명			
		원	원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군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14호서식]

포 상 금(품) 지 급 대 장

		담당자	팀 장	단 장	결 재
신 고 자	주소				
지 급 내 용					
신 고 일 시	신고내용	추징금확정액	수 납 액	수납월일	
지 급 일 시	지 급 내 용	포 상 금 (품) 산 출 내 역			
비 고					

[별지 제15호서식]

도 수 (누 수) 신 고 처 리 대 장

결 재			일련 번호	신고 월일	신 고 자		도수(누수)내력			처 리 결 과
단장	팀장	담당자			주소	성명	위치	내용	도수자	

[별지 제16호 서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

소 장		지 시	
접수일자		담 당	
접수번호		담당자	

신청인	성명 (수용가명)		전화번호	
	주소			
대상시설(주소)				
총 공사비용		만원(₩)		
지원신청금액		만원(₩)		
공사기간				
시공업체		상호	대표자	(전화)
<p>「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군산시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금액산출서(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사비 지원금 입금통장 사본 |
|------|--|

※ 굵은선 안에는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하여 주십시오

군산시 공고 제2009-1170호

공 고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 인력·조직 개선지침에 따라 실무인력 감소를 초래하는 동 담당제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업무분야, 행정지원분야로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법규명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3. 주요내용

○ 업무 분장사무표 조정 【별표1】

▶ 동 담당제 폐지로 동 업무분야 및 분장사무 삭제

- 이원화된 주민생활업무분야, 행정지원업무분야 삭제
- 업무분야의 구분을 없애고 중복되는 분장사무 삭제
- ▶ 읍면 민원업무분야 분장사무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수정
 - 2008. 1. 1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
- 동 담당제 폐지 후 무보직 담당에게 명확한 업무부여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7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6122,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담당(450-6122)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규칙안 : 별 첨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읍면동 소관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

【읍면동 소관】

읍면동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읍면장	주민생활 업무분야	서무, 보안, 인사, 교육, 예산, 회계, 선거, 통계, 공보, 관광,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지원·관리, 세외수입, 기부금품의 통제, 복지관련 지역자원발굴·관리·복지위원관리·서비스연계관리, 자활 및 노인일자리 사업장 관리, 기타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민원업무 분 야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범죄자·과산자 대장정리, 민방위 조직편성 및 운영
	산업업무 분 야	농업, 농사의 개량지식과 기술의 보급, 잡업, 양정, 수산, 농지개량, 수리산림, 수렵, 광업, 상업, 공업, 특허, 전기, 연료, 기상관측, 지역사회 개발과 기타 산업에 관한 사항

읍면동장	분 장 사 무
동 장	총무, 공보, 감사, 기획예산, 회계, 정보통신, 민원,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민방위등 일반업무 사회복지관련분야(서비스연계, 자활및노인복지, 지역자원발굴등)

※ 기타 읍면동의 특성에 따라 읍면동장이 적정배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			[별표1] 분장사무표 (제3조 관련)		
【읍면동 소관】			【읍면동 소관】		
읍면동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읍면동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읍면장	주민생활 업무분야	서무, 보안 인사, 교육, 예산, 회계, 선거, 통계, 공보, 관광,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지원관리, 세외수입, 기부금품의 통제, 복지관련 지역자원발굴관리복지지원관리, 서비스연계관리, 서비스연계관리, 자활 및 노인일자리 사업장 관리, 기타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읍면장	주민생활 업무분야	서무, 보안 인사, 교육, 예산, 회계, 선거, 통계, 공보, 관광,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지원관리, 세외수입, 기부금품의 통제, 복지관련 지역자원발굴관리복지지원관리, 서비스연계관리, 서비스연계관리, 자활 및 노인일자리 사업장 관리, 기타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민원 업무분야	<u>호적</u> ,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범죄자 파산자 대장정리, 민방위 조직편성 및 운영		민원 업무분야	<u>가족관계등록</u> ,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범죄자파산자 대장정리, 민방위 조직편성 및 운영
	산업 업무분야	농업, 농사의 개량지식과 기술의 보급, 잡업 양정, 수산, 농지개량, 수리산림, 수렵, 광업, 상업, 공업, 특히, 전기, 연료, 기상관측, 지역사회 개발과 기타 산업에 관한 사항		산업 업무분야	농업, 농사의 개량지식과 기술의 보급, 잡업 양정, 수산, 농지개량, 수리산림, 수렵, 광업, 상업, 공업, 특히, 전기, 연료, 기상관측, 지역사회 개발과 기타 산업에 관한 사항
읍면동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읍면동장	<삭제>	분 장 사 무
동 장	<u>주민생활 업무분야 (단독설치 해당동)</u>	총무, 공보, 감사, 기획예산, 회계, 정보통신 민원,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민방위등 일반업무, 사회복지관련분야(서비스연계, 자활 및 노인복지, 지역자원발굴등)	동 장	<삭제>	총무, 공보, 감사, 기획예산, 회계, 정보통신 민원,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민방위등 일반업무, 사회복지관련분야(서비스연계, 자활 및 노인복지, 지역자원발굴등)
	<u>행정지원 업무분야</u>	<u>총무, 공보, 감사, 기획예산, 회계, 정보통신 민원,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민방위등 일반업무</u>		<삭제>	<삭제>

군산시 공고 제2009 - 1171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승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전보시 우대하는 등 지방공무원 인센티브를 개선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법규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주요내용

○ 특별승진 대상 명확화(안 제28조의2)

-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승진 대상을 국정·시책과제 추진, 격무·기피 업무, 주민수요 급증 업무 추진 등으로 구체적 제시

○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 전보시 우대(안 제31조의2)

- 격무·기피업무, 특정지위 등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본인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

○ 【별표 5】 , 【별표 14】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7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6122, FAX: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담당(450-6122)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규칙안 : 별 첨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자격증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요건(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서비스계의 기술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구분표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임용예정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산업기사

(2) 기능직공무원

임용예정계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기사(2년) 산업기사(4년)	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기능사

나. 임용예정직렬(직류)별 자격증의 종류

- (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및 [별표 2]의 직렬(직류)과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의 직무 분야를 비교하여 상호 관련있는 자격증으로 하되,
- (2) 임용예정직의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자격증이어야 한다.

다. 기타요건

-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2) 4급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특별임용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 3급 : 8년이상
 - 4급 : 4년이상
-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 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5)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6)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감정평가사(7)	감정평가사(3)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Ⅱ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Ⅰ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Ⅰ급(3)	직업상담사Ⅰ급 직업상담사Ⅱ급(3)	직업상담사Ⅱ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 관리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 관리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 관리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 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 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 (7)		수산질병관리사 (3)	수산질병관리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 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수의사(3)	약사(3)	수의사 약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약사(7)	위생사(8)	위생사(5)							
	대 기		위생사(12)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직렬 \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비					
시 설	건 축	항공정비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정비사(3)	항공정비사(3)	항공정비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10)	항공기관사(6)	항공기관사(3)	항공기관사(3)	항공기관사(3)	항공기관사	
		건축사(5)	건축사					

비 고 :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 계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전 기	전 기				
운 전	운 전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선 박	선 박	1급 항해사	3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2급 항해사	4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1급 기관사	3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2급 기관사	4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임상병리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5)	의무기록사(2)	의무기록사			
		방사선사(5)	방사선사(2)	방사선사			
		물리치료사(5)	물리치료사(2)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5)	치과기공사(2)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5)	치과위생사(2)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5)	작업치료사(2)	작업치료사			
		간호사(5)	간호사(2)	간호사			
		조산사(5)	조산사(2)	조산사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5)	간호사(2)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5)	조산사(2)	조산사			
위 생	위 생	위생사(5)	위생사(2)	위생사			조리사 1급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2)	영양사			조리사 2급(2년)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3)			조리사 2급
				오물처리사1급(3)			오물처리사 1급
							오물처리사 2급(2)
사무보조	위 드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필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2·3급
				영문속기 1급			영문속기 2·3급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계 리			주산 1급이상			주산 2·3급
				부기 1급			부기 2급
	사 서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비 고 :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별표 14]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9조 관련)

임용예정 계급		2 급 · 연구관· 지도관	3 급 · 연구관· 지도관	4 급 · 연구관· 지도관	5 급 · 연구관· 지도관	6 급 · 연구사· 지도사	7 급 · 연구사· 지도사	8 급	9 급
교육공무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 학교 및 동부설 연구소의 교원 포함)	교수	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	전임강사			
	고등학교			24호봉 이상의 교원	16호봉 이상의 교원	12호봉 이상의 교원	11호봉 이하의 교원		
<u>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 사·지방공단</u>		이사 (3년이상)	이사	부장	과장 (차장)	계장 (대리)	평사원 (3년이상)	평사원	원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⑥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① 성 명 한글 (한문)		② 생 년 월 일 . . . (세)		④ 성 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⑤ 희망지역 제1지역 시군						
		③ 주민등록번호				※ 등록심사 사진대조						
						서류심사						
				제1지역 시군		□□ □□						
⑦ 현 주 소		(사진부착)										
⑧ 병 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 제대연월일 . . .			
								미필사유				
⑨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⑩ 자 격 면 허				⑪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⑫ 특 기		⑬ 취 미		⑭ 운 동		⑮ 중 교						
⑯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⑰ 재산상황 가. 부동산(㎡) 나. 동 산(원)

⑱ 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⑲ 가족사항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성별	연령	직업	최 종 학 력	비고

첨 부 서 류	가족관계등록부	신원증명원	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신원진술서
통 수	통	통	통	통	통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⑳
우
무
인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2통

(3) 주민등록부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5)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6)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7) 취업보호대상자는(전물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8)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9)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

(10)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 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생 년 월 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 ③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④ 성 별 … 남·녀 해당 □에 √표를 한다.
- ⑤ 회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⑥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⑦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 ⑧ 병 역 … 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중, 병역 면제처분 기타 사유를 기입한다.
- ⑨ 학 력 … 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 년수를 기입한다.
- ⑩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 ⑪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 ⑫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 ⑬ 재 산 상 황 … 부동산은 가옥·임야·전답 등으로 구분하여 ㎡로, 동산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 ⑭ 가 족 상 황 … 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최종학력을 기입한다.
- ⑮ 우 무 인 … 오른쪽무인(엄지손가락)을 날인한다.

6. 민간인 신원진술서 기재요령

가. 본적을 전직한 사람은 반드시 원적을 기재(신원진술서에 만일 원적란이 없는 경우에는 가본적을 원적으로 정정하고 기재)

나. 본적은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하게, 현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를 통·반까지 명기

다. 가족사항중 남자 기혼자는 처가를, 여자 기혼자는 친가를 미혼자는 미혼으로 기재

라. 보증인은 직계가족이 아닌 자로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배경이 되는 인물)를 기재

마. 8:15이후 거주지 기재에는 기간(년월일), 거주지(번지 및 통·반까지), 당시 호주 및 전거사유를 기재하고, 현재란은 현주소와 동일하여야 하며, 전거사실이 없을 경우 현재 본적·주소를 기재한다.

바. 해당없는 란에는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필증을 추후 본인에게 송부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의2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도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p> <p>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 심사하여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p> <p>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p>	<p>제28조의2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p> <p>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p> <p>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p> <p>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p> <p>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신설 〉</p>	<p>제31조의2 (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p>